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13397 |
|----------|-------|

발의연월일 : 2025. 9. 30.

발 의 자 : 위성곤 · 정준호 · 박희승  
임호선 · 김기표 · 강준현  
정춘생 · 박정현 · 이학영  
이건태 · 장철민 · 황정아  
박균택 의원(13인)

### 제안이유

역대 정부는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전자정부, 스마트 정부, 정부3.0, 디지털정부, 디지털플랫폼정부 등 정부혁신을 추진하며 국민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서비스를 제공해 왔음.

그러나 4차 산업혁명과 초거대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로 기존의 전자정부 수준을 넘어 인공지능과 데이터가 주도하는 행정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

한편,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산업·기술 패권 경쟁에 돌입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공공부문부터 인공지능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공공부문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 및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인공지능 및 데이터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인

공지능 기술의 국정 전반에 대한 도입과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인공지능정부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인공지능 활용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신뢰기반 조성 및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윤리 원칙 이행, 영향평가 실시, 권리구제 절차 등을 마련하여 공공부문이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효율적 행정을 구현하여 정부 혁신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제명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안 제명).
- 나.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 및 신뢰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이 법에 정함을 명시하고,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행정일 것을 추가함(안 제1조).
- 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학습 가능 데이터’의 정의를 신설하고, ‘데이터기반행정’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으로 개정하여 그 정의에 인공지능의 활용을 포함하여 효율적·객관적·과학적일 것을 추가함(안 제2조).
- 라.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최종 권한과 책임이 해당 공공기관에 있음을 명확히 하도록 책무를 추가하고, 인공지능 활용 과정에서 편향성과 투명성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함(안 제3조).

마. 기본계획의 포함 사항으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역량 강화, 신뢰성 확보 계획을 추가하고, 부문계획의 작성지침 작성 시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며, 시행계획 포함 사항으로 학습용 데이터 관리 및 학습 가능 데이터에 관한 계획 등을 추가함(안 제6조, 제7조).

바. 인공지능 기술의 국정 전반에 대한 도입과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인공지능정부특별위원회를 둠(안 제7조의2).

사.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운영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학습용 데이터,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목록이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과 연계·제공 및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제3항 신설).

아.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명칭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으로 변경하고 학습용 데이터 관리, 인공지능의 신뢰기반 조성 등을 책임관 업무로 추가하며,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 협의회의 구성·운영 근거를 신설함(안 제19조).

자. 인공지능·데이터 관련 연구자 등이 행정안전부장관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협회는 공공기관 인공지능·데이터 기술·산업의 진흥,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신설).

- 차. 행정안전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중복 투자 없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인공지능을 도입·활용하도록 기획·개발·운영·고도화 등 전 단계를 지원하는 인공지능 공통기반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27조 신설).
- 카.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의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 및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교육을 민간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신설).
- 타. 공공기관의 장에게 학습용 데이터의 적정 품질수준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학습용 데이터 품질관리, 공동 활용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29조 신설).
- 파.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인공지능 도입·활용을 위하여 공정성·투명성 등 신뢰기반 조성에 대한 공공기관 인공지능 활용 윤리원칙을 제정·공표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윤리원칙의 이행을 위하여 소관 업무에 적용될 윤리 시책을 마련하여 교육 등 실시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함(안 제32조 신설).
- 하. 공공기관의 장은 도입하고자 하는 인공지능이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영향평가 받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대처하도록 위험관리방안

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33조 신설).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데이터기반행정”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으로 한다.

제1조 중 “데이터를”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를”로, “활성화에”를 “활성화와 신뢰 기반 조성”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을 “효율적·객관적·과학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중전의 제2호) 중 “데이터기반행정”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으로, “생성하거나”를 “인공지능을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을 “효율적·객관적·과학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공지능을 말하며, 같은 조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과 인공지능기술을 포함한다.
5. “학습용 데이터”란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 중 인공지능의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말한다.
6. “학습 가능 데이터”란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학습 가능한 형태로

변환·처리된 데이터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를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행정의 활성화와 신뢰 기반 조성”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데이터기반행정”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노력하여야 한다”를 “노력하여야 하며, 모든 데이터는 학습 가능 데이터로 관리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데이터기반행정”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행정”으로 한다.

⑤ 공공기관은 인공지능을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이 해당 공공기관에 있음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⑦ 공공기관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 및 데이터의 편향성 및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중 “데이터기반행정에”를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에”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데이터기반행정”을 각각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데이터”를 “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중 “데이터기반행정”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으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데이터기반행정을”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을”로, “데이터기반행정”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제2호 및 제3호 중 “데이터기반행정”을 각각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데이터기반행정”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0호(종전의 제7호) 중 “데이터기반행정”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8.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에 필요한 신뢰성 확보에 관한 계획

9.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에 필요한 데이터의 학습 가능 데이터로의 관리 계획

이 경우 작성 지침에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공공부문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 중 “데이터기반행정”을 각각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구축”을 “구축과 제29조에 따른 학습용 데이터 관리에 관한 계획 및 제30조에 따른 학습 가능 데이터

관리”로 한다.

제2장의2(제7조의2부터 제7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장의2 인공지능정부특별위원회

제7조의2(인공지능정부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인공지능 기술의 국정 전반에 대한 도입과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인공지능정부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인공지능 정부 구현을 위한 국가 비전 및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정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 기술 도입에 따른 행정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및 조직문화 혁신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 정부 구현을 위한 공무원 교육·훈련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5. 공공부문 초거대 인공지능 도입·활용 및 인공지능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신뢰할 수 있는 공공부문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윤리 원칙

7. 인공지능 기술 활용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8. 주요 인공지능 정부 관련 사업의 검토·조정 및 추진실적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9. 공공부문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조성 및 민간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인공지능 정부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7조의3(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1명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차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
2. 인공지능, 데이터, 정보보호, 행정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

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7조의4(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의5(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의6(회의)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공동으로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7(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공공 인공지능 윤리·제도 분과위원회
2. 공공 인공지능 인프라 분과위원회
3. 공공서비스 혁신 분과위원회
4. 공공 인공지능 산업·생태계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과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8(인공지능정부민관협력포럼) ① 위원회는 인공지능 정부 정책 및 기술에 대한 전문적 자문과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 수렴을 위하여 산업계·학계 등의 전문가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인공지능정부민관협력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포럼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의9(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단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의견 진술,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국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의10(수당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의11(존속 기한)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제7조의12(운영세칙)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할 수 있다”를 “등록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요청할 수 있다”를 “요청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데이터기반행정을”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데이터기반행정에”를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에”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중 “데이터기반행정의”를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의”로 한다.

제1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 분석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학습 가능 데이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데이터기반행정”을 각각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데이터”를 “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데이터기반행정”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데이터기반행정”을 각각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데이터기반행정”을 각각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으로 한다.

3. 제30조에 따른 학습 가능 데이터의 효율적인 생성·관리 및 활용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특정 소프트웨어에 종속되지 아니하는 개방형 문서 형식(Open Document Format, ODF) 및 오픈 XML(OOXML) 등의 지정 및 활용

나. 문서의 내용 및 맥락을 식별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의 표준화  
다. 데이터의 공동활용 및 민간에 대한 제공을 위한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등 기술적 표준

라. 그 밖에 학습 가능 데이터의 품질 및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3. 학습 가능 데이터 관련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 및 개발

제18조제1항제4호 중 “데이터 분석 등”을 “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 분석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9조에 따른 학습용 데이터, 제30조에 따른 학습 가능 데이터 및 제31조에 따른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목록이 제1항의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제공·연계 및 공동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데이터기반행정”을 각각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하기”를 “데이터관리체계 구축, 제29조에 따른 학습용 데이터 관리 및 제30조에 따른 학습 가능 데이터 관리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데이터기반행정”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 시 신뢰성 확보와 위험관리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의 효율적 추진과 축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임명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으로 구성된 인공지능 및 데

이터기반행정 책임관 협의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의 제목 “(데이터분석센터)”를 “(인공지능데이터분석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데이터기반행정”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으로, “데이터의”를 “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의”로, “데이터분석센터”를 “인공지능데이터분석센터(이하 “분석센터”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데이터의 분석등을”을 “분석등을”로,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정부통합인공지능데이터분석센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데이터”를 각각 “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따라 데이터”를 “따라 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통합분석센터의 데이터”를 “통합분석센터의 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로, “통보받은 데이터 분석등의 결과를”을 “통보받은 결과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전문적인 데이터”를 “전문적인 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로, “데이터분석센터”를 “분석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 중 “데이터분석센터”를 각각 “분석센터”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데이터기반행정”을 각각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데이터기반행정”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으로, “데이터 분석등”을 “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 분석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구축에”를 “구축, 제29조에 따른 학습용 데이터 관리 및

제30조에 따른 학습 가능 데이터 관리에”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종전의 제6호) 중 “데이터기반행정”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으로 한다.

6. 제24조에 따른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제28조에 따른 인공지능 교육에 관한 업무 지원
7. 제27조에 따른 공통기반 구축 및 제31조에 따른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목록 관리에 관한 업무 지원
8. 제32조에 따른 인공지능 활용 윤리원칙 및 제33조에 따른 인공지능 영향평가에 관한 업무 지원

제22조의 제목 및 제1항 중 “데이터기반행정”을 각각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공공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조제4항 전단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3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데이터기반행정”을 각각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데이터”를 각각 “인공지능 및 데이터”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데이터기

반행정”을 각각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으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공공 인공지능·데이터협회의 설립) ① 인공지능 및 데이터와 관련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자는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및 데이터 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공 인공지능·데이터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기술과 산업의 진흥
2.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제도 개선 건의
3. 제24조에 따른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4. 인공지능 및 데이터 현황 관련 통계조사
5. 제28조에 따라 위탁받은 인공지능 교육(인공지능의 이해 및 활용에 필요한 데이터 교육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협회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⑤ 협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제27조부터 제34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장 인공지능 활용 촉진 및 신뢰기반 확보

제27조(공통기반의 구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중복투자 없이 공동으로 이용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인공지능을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의 기획·개발·운영·고도화 단계를 지원하는 기반(이하 “공통기반”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공통기반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공통기반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 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전문적 지식 함양 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교육의 실시 및 제2항에 따른 인공지능 교육업무의 위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학습용 데이터의 관리)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학습용 데이터의 기관 간 공유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학습용 데이터의 적정한 품질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학습용 데이터의 품질관리, 학습용 데이터의 공동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30조(학습 가능 데이터의 관리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행정기반행정의 고도화를 위하여 소관 문서 등(「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제2조제6호에 따른 학습 가능 데이터로 변환하여 관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학습 가능 데이터로 변환·관리 하기에 앞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효과성에 대한 분석(이하 “효과성 분석”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효과성 분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대국민 서비스 개선 및 행정 효율화에 미치는 영향
2.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 지원에 대한 기여도
3. 데이터 변환·관리에 소요되는 기술적·재정적 타당성
4. 그 밖에 데이터의 활용 가치 및 중요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공공기관의 장은 효과성 분석 결과에 따라 학습 가능 데이터로 관리할 대상과 범위를 정하고, 이에 따라 데이터를 관리하여야 한

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그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현황을 목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학습 가능 데이터의 관리, 품질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31조(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목록 관리)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 등의 현황을 관리하고, 그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현황을 목록으로 관리하고 그 목록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목록 관리 및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2조(인공지능 활용 윤리원칙)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인공지능을 도입할 수 있도록 공정성·투명성·책임성 등의 신뢰기반 구성에 필요한 사항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반영하여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윤리원칙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윤리원칙의 이행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소관업무에 적용되는 윤리 시책을 마련하고,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에게 이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인공지능 영향평가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인공지능을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인공지능이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인공지능 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입하려는 인공지능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공지능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보안 유지 또는 고도의 기밀 보호가 필요한 경우
2. 단순·반복적이거나 경미하여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공공기관의 장은 인공지능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인공지능 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공지능 영향평가를 받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등 각종 위험을 대처할 수 있도록 위험관리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공지능 영향평가의 실시, 위험관리방안 수립

· 시행 등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인공지능 영향평가의 기준·방법·절차, 위험관리방안 수립 방법

·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권리구제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 결정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이의를 제기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절차,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4조(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1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

으로 본다.

제5조(학습 가능 데이터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효과성 분석을 실시하거나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인공지능 영향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인공지능을 도입·활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3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공지능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이하 “데이터기반행정”이라 한다)”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6항제1호 중 “데이터기반행정”을 각각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6호의2 중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데이터기반행정”을 각각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를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제4호 중 “데이터기반행정”을 각각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으로 한다.

②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34조제1항 단서 중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를 각각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로 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 style="text-align: center;"><u>데이터기반행정</u> 활성화에 관한<br/>법률</p> <p>제1조(목적) 이 법은 <u>데이터를</u> 기<br/>반으로 한 행정의 <u>활성화</u>에 필<br/>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u>객관</u><br/><u>적이고 과학적인</u> 행정을 통하<br/>여 공공기관의 책임성, 대응성<br/>및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br/>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br/>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br/>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1. (생    략)</p> <p>2. “<u>데이터기반행정</u>”이란 공공<br/>기관이 <u>생성하거나</u> 다른 공<br/>공기관 및 법인·단체 등으</p> | <p style="text-align: center;"><u>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u> 활<br/>성화에 관한 법률</p> <p>제1조(목적) -----<u>인공지능 및</u><br/><u>데이터를</u>-----<u>활성화와</u><br/><u>신뢰 기반 조성</u>에-----<br/><u>효율적·객관적·과학적</u>-----<br/>-----<br/>-----<br/>-----<br/>-----.</p> <p>제2조(정의) -----<br/>-----.</p> <p>1. “<u>인공지능</u>”이란 「<u>인공지능</u><br/><u>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u><br/><u>관한 기본법</u>」 제2조제1호에<br/>따른 인공지능을 말하며, 같<br/>은 조 제2호와 제3호에 따른<br/><u>인공지능시스템과 인공지능기</u><br/><u>술을 포함한다.</u></p> <p>2. (현행 제1호와 같음)</p> <p>3. --<u>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u><br/><u>행정</u>-----<u>인공지능을 활용</u><br/><u>하거나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u></p> |

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하는 등(이하 “분석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 3. (생략)

## <신 설>

<신 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기반 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

효율적 · 객관적 · 과학적

4. (현행 제3호와 같음)

5. “학습용 데이터”란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 중 인공지능의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말한다.

6. “학습 가능 데이터”란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학습 가능한 형태로 변환·처리된 데이터를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와 신  
뢰 기반 조성을-----  
-----  
-----.

② -----인  
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

행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 및  
기술의 연구·개발을 실시하여  
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데이터의 최신  
성·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생략)

<신설>

⑤ 공공기관은 데이터기반행정  
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  
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  
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  
여야 한다.

<신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데

-----  
-----  
-----.

③ -----  
-----  
-----노력하여야 하며, 모든  
데이터는 학습 가능 데이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공공기관은 인공지능을 정  
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하  
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이 해당  
공공기관에 있음을 명확히 하  
여야 한다.

⑥ -----인공지능 및 데이  
터기반행정-----  
-----  
-----.

⑦ 공공기관은 인공지능 및 데  
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  
에서 인공지능 및 데이터의 편  
향성 및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인

이터기반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생략)

제5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정책의 심의·조정)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정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조정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데이터 분석등이 필요한 사항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체계적으로

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에--

-----  
-----  
-----.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정책의 심의·조정)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  
-----  
-----  
-----  
-----  
-----  
-----.

1.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  
-----  
-----
2.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  
-----
3. -----  
-----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

제6조(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① -----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을

|                                                                      |                                                      |
|----------------------------------------------------------------------|------------------------------------------------------|
| 추진하기 위하여 <u>데이터기반행정</u>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 <u>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u> -----                    |
| ② (생략)                                                               | -----.                                               |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현행과 같음)                                           |
| 1. <u>데이터기반행정</u> 활성화의 기본목표 및 중장기 발전방향                               | ③ -----                                              |
| 2. <u>데이터기반행정</u> 활성화와 관련된 법령·제도의 개선                                 | -----.                                               |
| 3. 주요 분야별 <u>데이터기반행정</u> 활성화 대책                                      | 1. <u>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u>                             |
| 4. 5. (생략)                                                           | -----                                                |
| <u>&lt;신설&gt;</u>                                                    | 2. <u>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u>                             |
| 6. <u>데이터기반행정</u> 활성화에 필요한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 -----                                                |
| <u>&lt;신설&gt;</u>                                                    | 3. ----- <u>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u> -----                 |
| <u>&lt;신설&gt;</u>                                                    | 4. 5. (현행과 같음)                                       |
| 7. 그 밖에 <u>데이터기반행정</u>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6. <u>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u>                 |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략위원                                                      | 7. <u>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u>                             |
|                                                                      | -----                                                |
|                                                                      | 8. <u>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에 필요한 신뢰성 확보에 관한 계획</u>          |
|                                                                      | 9. <u>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에 필요한 데이터의 학습 가능 데이터로의 관리 계획</u> |
|                                                                      | 10. ---- <u>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u> -----                 |
|                                                                      | ④ -----                                              |

회의 심의를 거쳐 부문계획의 작성 지침을 정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⑤ (생략)

제7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

----- . 이 경우  
작성 지침에는 「인공지능 발  
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  
한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  
가인공지능위원회가 심의·의  
결한 공공부문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반영  
하여야 한다.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  
정 활성화 시행계획) ① -----  
-----  
-----인공지능 및 데  
이터기반행정-----

② \_\_\_\_\_

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데이터 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 추진이 다른 기관의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연도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성과 평가
2.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해당 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계획
3.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예산운용 계획 및 전문인력 양성 계획
4. 제16조에 따른 데이터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계획
5. (생략)
6.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

③ -----  
-----.

1.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  
-----
2. -----  
-----인공지능 및 데이  
터기반행정-----
3.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  
-----  
-----
4. -----  
--구축과 제29조에 따른 학  
습용 데이터 관리에 관한 계  
획 및 제30조에 따른 학습 가  
능 데이터 관리-----
5. (현행과 같음)
6.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

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생략)

<신설>

<신설>

반행정-----

④ (현행과 같음)

제2장의2

인공지능정부특별위원회

제7조의2(인공지능정부특별위원

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인공지능

기술의 국정 전반에 대한

도입과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

의·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

부장관 소속으로 인공지능정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의·조정한다.

1. 인공지능 정부 구현을 위한

국가 비전 및 중장기 발전 전

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정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시

행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 기술 도입에 따른

행정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및

조직문화 혁신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 정부 구현을 위한

공무원 교육·훈련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신 설>

5. 공공부문 초거대 인공지능 도입·활용 및 인공지능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신뢰할 수 있는 공공부문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윤리 원칙
  7. 인공지능 기술 활용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8. 주요 인공지능 정부 관련 사업의 검토·조정 및 추진실적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9. 공공부문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조성 및 민간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인공지능 정부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 제7조의3(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공동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1명이 된다.

<신 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차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

2. 인공지능, 데이터, 정보보호, 행정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7조의4(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의5(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의6(회의)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공동으로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

<신 설>

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7(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공공 인공지능 윤리·제도 분과위원회

2. 공공 인공지능 인프라 분과위원회

3. 공공서비스 혁신 분과위원회

4. 공공 인공지능 산업·생태계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과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7조의8(인공지능정부민관협력포럼) ① 위원회는 인공지능 정부 정책 및 기술에 대한 전문적 자문과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 수렴을 위하여 산업계·학계 등의 전문가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인공지능정부민관협력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포럼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의9(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단체에 대하여 자료제출, 의견 진술,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국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의10(수당 등) 위원회 또는



② (생 략)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여러 기관이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조사하여 관련 공공기관에 해당 데이터의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생 략)

제14조(민간데이터의 제공 요청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에 의한 구매 및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하 “민간법인등”이라 한다)에게 해당 민간법인등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민간법인등이 데이터의 제공·연계 또는 공동활용 등을 통하여 데이터기반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요청하여야 한다. -----  
-----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민간데이터의 제공 요청 등) ①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을-----  
-----  
-----  
-----  
-----  
-----  
-----  
-----  
-----.

② -----  
-----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에-----  
-----  
-----.

은 다른 공공기관을 대표하여  
민간법인등과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생략)

제4장 데이터기반행정의 기반  
구축

제16조(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

①·② (생략)

<신설>

③ 제2항에 따른 데이터관리체  
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데이터기반행정 표준화)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기  
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표  
준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사항이 「산업표준화법」에 따  
른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  
-----  
-----.

③ (현행과 같음)

제4장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의 기반 구축

제16조(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 분석등의 활성  
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데이  
터를 학습 가능 데이터로 관리  
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  
-----  
-----.

제17조(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  
행정 표준화) ①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  
-----  
-----.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  
반행정-----  
-----  
-----

하다.

1. 데이터 분석등의 절차 및 방법

2. (생략)

<신설>

3.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

-----.

1. 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

2. (현행과 같음)

3. 제30조에 따른 학습 가능 데이터의 효율적인 생성·관리 및 활용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특정 소프트웨어에 종속되지 아니하는 개방형 문서 형식(Open Document Format, ODF) 및 오픈 XML(OOXML) 등의 지정 및 활용

나. 문서의 내용 및 맥락을 식별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의 표준화

다. 데이터의 공동활용 및 민간에 대한 제공을 위한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등 기술적 표준

라. 그 밖에 학습 가능 데이터의 품질 및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인공지능 및 데이

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기  
반행정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  
다.

1.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 및 개발
2. 데이터기반행정 표준과 관련  
된 국제표준기구 또는 국제표  
준기관과 협력체계 유지·강  
화

<신 설>

3.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표  
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데  
이터기반행정 표준화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  
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할 수 있도  
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한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터기반행정-----

②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  
-----  
-----.

1.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  
-----
2.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  
-----  
-----  
-----

3. 학습 가능 데이터 관련 국내  
외 표준의 조사·연구 및 개  
발

4.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행정-----

③ -----인  
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  
-----  
-----.

제18조(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① -----  
-----  
-----  
-----  
-----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정책 수립·의사결정 지원 및 이력 관리

5.·6. (생략)

② (생략)

<신설>

③ (생략)

제19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

1. ~ 3. (현행과 같음)

4. 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 분석 등-----  
-----

5.·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9조에 따른 학습용 데이터, 제30조에 따른 학습 가능 데이터 및 제31조에 따른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목록이 제1항의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제공·연계 및 공동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9조(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① -----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

-----.

②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

-----.

|                                                                                                                                                                                                                                                                                                                    |                                                                                                                                                                                                                                                                                                                                                                                                                                                                                                                                                                              |
|--------------------------------------------------------------------------------------------------------------------------------------------------------------------------------------------------------------------------------------------------------------------------------------------------------------------|------------------------------------------------------------------------------------------------------------------------------------------------------------------------------------------------------------------------------------------------------------------------------------------------------------------------------------------------------------------------------------------------------------------------------------------------------------------------------------------------------------------------------------------------------------------------------|
| <p>1. <u>데이터기반행정</u> 활성화 시책<br/>의 총괄 조정 및 지원</p> <p>2. <u>데이터기반행정</u> 관련 데이터<br/>의 연계·제공·공동활용에<br/>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p> <p>3. 제16조에 따른 <u>데이터관리체<br/>계를 구축하기</u> 위한 업무 총<br/>괄 및 지원</p> <p><u>&lt;신 설&gt;</u></p> <p>4. 그 밖에 <u>데이터기반행정</u>에<br/>관한 업무</p> <p><u>&lt;신 설&gt;</u></p> <p>제20조(<u>데이터분석센터</u>) ① 공공</p> | <p>1. <u>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u><br/>-----</p> <p>2. <u>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u><br/>-----<br/>-----</p> <p>3. -----<u>데이터관리체<br/>계</u> 구축, 제29조에 따른 학습<br/><u>용 데이터 관리 및 제30조에<br/>따른 학습 가능 데이터 관리</u><br/>를-----</p> <p>4. <u>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 시<br/>신뢰성 확보와 위험관리</u>에 관<br/>한 업무 총괄 및 지원</p> <p>5. -----<u>인공지능 및 데이터기<br/>반행정</u>-----</p> <p>③ <u>행정안전부장관은 인공지능<br/>및 데이터기반행정의 효율적<br/>추진과 촉진을 위하여 제1항에<br/>따라 임명된 중앙행정기관과<br/>지방자치단체의 인공지능 및<br/>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으로 구<br/>성된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br/>행정 책임관 협의회를 대통령<br/>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br/>· 운영할 수 있다.</u></p> <p>제20조(<u>인공지능데이터분석센터</u>)</p> |
|--------------------------------------------------------------------------------------------------------------------------------------------------------------------------------------------------------------------------------------------------------------------------------------------------------------------|------------------------------------------------------------------------------------------------------------------------------------------------------------------------------------------------------------------------------------------------------------------------------------------------------------------------------------------------------------------------------------------------------------------------------------------------------------------------------------------------------------------------------------------------------------------------------|

기관의 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의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의 분석 등을 통하여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하여 데이터분석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데이터의 분석등을 통하여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통합 데이터분석센터(이하 “통합분석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여러 기관과 관련된 주요 현안의 해결 및 국정과제의 추진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데이터 분석등이 필요하다고 전략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2. 공공기관 간 데이터 분석등의 협업이 필요하여 통합분석센터에 지원을 요청한 사항
3. 공공기관이 소관 분야 데이터 분석등을 위하여 통합분석센터에 지원을 요청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 수립 및 의사

①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행정의-----  
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  
-----인공지능데이터분석센터(이하 “분석센터”라 한다)-----.

② -----  
-----  
-----분석등을-----  
-----  
-----정부통합인공지능데이터분석센터-----  
-----  
-----.

1. -----  
-----  
-----  
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  
-----
2. -----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  
-----
3. -----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  
-----
4. -----

결정에 있어서 데이터 분석등  
이 필요하다고 전략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라 소관 데이터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공한  
공공기관의 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데이  
터 분석등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분석  
센터의 데이터 분석등의 결과  
를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  
보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  
은 통보받은 데이터 분석등의  
결과를 소관 정책에 반영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공공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  
부장관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데이터 분석등을 위하여 데이  
터분석센터 및 통합분석센터에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을 배치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공공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  
부장관은 데이터분석센터 및

-----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따라 인공  
지능 활용 및 데이터-----  
-----.

⑤ -----통합분석  
센터의 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  
터-----  
-----  
-----통보받은 결과를-----  
-----  
-----.

⑥ -----  
-----전문적인  
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  
-----분석센터-----  
-----  
-----.

⑦ -----  
-----분석센터-----

통합분석센터 내에 수집되거나  
저장된 데이터와 데이터 분석  
결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  
다.

⑧ 그 밖에 데이터분석센터 및  
통합분석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21조(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기  
반행정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  
로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데  
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  
한 정책, 제도 및 기술의 조  
사·연구
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  
한 통계의 조사·분석
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  
한 데이터 분석등 지원

-----  
-----  
-----  
-----  
-----.

⑧ -----분석센터-----  
-----  
-----  
-----.

#### 제21조(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

행정 전문기관) ① -----인공  
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  
-----  
-----인  
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  
-----  
-----.

② -----  
-----.

1.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  
-----  
-----
2.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  
-----
3.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  
---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

|                                                                                                                                                                                                                                                         |                                                                                                                                                                                                                                                                                                                                                                                                                                                                |
|---------------------------------------------------------------------------------------------------------------------------------------------------------------------------------------------------------------------------------------------------------|----------------------------------------------------------------------------------------------------------------------------------------------------------------------------------------------------------------------------------------------------------------------------------------------------------------------------------------------------------------------------------------------------------------------------------------------------------------|
| <p>4. (생략)</p> <p>5. 제16조에 따른 데이터관리체계 <u>구축</u>에 관한 업무 지원</p> <p>&lt;신설&gt;</p> <p>&lt;신설&gt;</p> <p>&lt;신설&gt;</p> <p>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u>데이터기반행정</u>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③ ~ ⑥ (생략)</p> <p>제22조(<u>데이터기반행정</u> 실태 점검 및 평가) ① 공공기관의 장</p> | <p><u>분석등</u>-----</p> <p>4. (현행과 같음)</p> <p>5. -----<br/>---<u>구축</u>, 제29조에 따른 학습용 데이터 관리 및 제30조에 따른 학습 가능 데이터 관리에-----</p> <p>6. 제24조에 따른 인공지능 및 <u>데이터</u>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제28조에 따른 인공지능 교육에 관한 업무 지원</p> <p>7. 제27조에 따른 공통기반 <u>구축</u> 및 제31조에 따른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목록 관리에 관한 업무 지원</p> <p>8. 제32조에 따른 인공지능 활용 윤리원칙 및 제33조에 따른 인공지능 영향평가에 관한 업무 지원</p> <p>9.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 -----</p> <p>③ ~ ⑥ (현행과 같음)</p> <p>제22조(<u>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u> 실태 점검 및 평가) ① -</p> |
|---------------------------------------------------------------------------------------------------------------------------------------------------------------------------------------------------------------------------------------------------------|----------------------------------------------------------------------------------------------------------------------------------------------------------------------------------------------------------------------------------------------------------------------------------------------------------------------------------------------------------------------------------------------------------------------------------------------------------------|

은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현황,  
데이터 연계·제공 및 공동활  
용 성과 등 데이터기반행정의  
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적으로 점검하  
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신설>

제23조(데이터기반행정 우수사례  
의 발굴·보급 등) ① 정부는  
데이터기반행정 우수사례를 발  
굴하여 포상하고 홍보할 수 있  
으며, 우수사례가 보급·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데이터기반행  
정 우수사례의 발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  
행정-----

-----인공지능 및 데이  
터기반행정-----

-----  
-----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공공기관의 장  
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조제  
4항 본문에 따른 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기  
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3조(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  
행정 우수사례의 발굴·보급  
등) ①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  
-----  
-----.

②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  
-----  
-----.

제24조(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2. (생략)

3. 데이터 활용 관련 직무표준의 마련 및 자격제도의 정착 지원

4.·5. (생략)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민간 및 국제 협력) 공공기관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과 관련한 민간 및 국제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기술과

제24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 ① -----  
-----인공지능  
및 데이터-----  
-----  
-----.

1.·2. (현행과 같음)

3. 인공지능 및 데이터-----  
-----  
-----

4.·5. (현행과 같음)

② -----  
-----인공지능 및  
데이터-----  
-----  
-----  
-----.

③ -----인공지능 및 데이  
터-----  
-----.

제25조(민간 및 국제 협력) ----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  
반행정-----  
-----  
-----.

1.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

인력의 교류 지원

2.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전문기술의 조사 및 연구

3.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공동사업의 추진 및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 설>

-----

2.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

-----

3.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

-----

--

4.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

제26조(공공 인공지능·데이터협

회의 설립) ① 인공지능 및 데

이터와 관련한 연구 등을 수행

하는 자는 공공기관의 인공지

능 및 데이터 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

를 받아 공공 인공지능·데이

터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협회

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를 수행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기

술과 산업의 진흥

2.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제도 개선 건의

3. 제24조에 따른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4. 인공지능 및 데이터 현황 관련 통계조사

5. 제28조에 따라 위탁받은 인공지능 교육(인공지능의 이해 및 활용에 필요한 데이터 교육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협회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⑤ 협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인공지능 활용 촉진 및 신뢰기반 확보

제27조(공통기반의 구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중

<신 설>

<신 설>

<신 설>

복투자 없이 공동으로 이용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인공지능을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의 기획·개발·운영·고도화 단계를 지원하는 기반(이하 “공통기반”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공통기반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공통기반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

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전문적 지식 함양 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교

<신 설>

육의 실시 및 제2항에 따른 인  
공지능 교육업무의 위탁에 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29조(학습용 데이터의 관리)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학습용 데이  
터의 기관 간 공유 및 활용 촉  
진을 위하여 학습용 데이터의  
적정한 품질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학습용  
데이터의 품질관리, 학습용 데  
이터의 공동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신 설>

제30조(학습 가능 데이터의 관리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인공  
지능 및 데이터행정기반행정의  
고도화를 위하여 소관 문서 등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제2조제6  
호에 따른 학습 가능 데이터로  
변환하여 관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학습 가능 데이터로 변환·관리하기에 앞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효과성에 대한 분석(이하 “효과성 분석”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효과성 분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대국민 서비스 개선 및 행정 효율화에 미치는 영향
2.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 지원에 대한 기여도
3. 데이터 변환·관리에 소요되는 기술적·재정적 타당성
4. 그 밖에 데이터의 활용 가치 및 중요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공공기관의 장은 효과성 분석 결과에 따라 학습 가능 데이터로 관리할 대상과 범위를 정하고, 이에 따라 데이터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그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현황을 목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학습 가능 데이터의 관리, 품질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31조(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목록 관리)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 등의 현황을 관리하고, 그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현황을 목록으로 관리하고 그 목록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목록 관리 및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2조(인공지능 활용 윤리원칙)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인공지능을 도입할 수 있도록 공정성·투명성·책임성 등의 신뢰

<신 설>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반영하여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윤리원칙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윤리원칙의 이행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소관업무에 적용되는 윤리 시책을 마련하고,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에게 이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인공지능 영향평가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인공지능을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인공지능이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인공지능 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입하려는 인공지능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인공지능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보안 유지 또는 고도의 기밀 보호가 필요한 경우

2. 단순·반복적이거나 경미하여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공공기관의 장은 인공지능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인공지능 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공지능 영향평가를 받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등 각종 위험을 대처할 수 있도록 위험관리방안을 수립·시행하

<신 설>

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공지능  
영향평가의 실시, 위험관리방안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행정  
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인공지능 영향평가의 기준  
·방법·절차, 위험관리방안 수  
립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권리구제 등) ① 행정안전  
부장관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 결정으로 권익을 침해받  
은 국민이 이의를 제기하고 신  
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  
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절차,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